

제 33 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33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 년 11 월 2 일(목요일), 09 시
2. 장 소 : 경기도 평택시 마산 12 로 21, (주)원익홀딩스 본사 강당
3. 회의 목적사항

- 제 1 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귀환 선임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 368 조의 4)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)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 하였습니다.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주소(PC, Mobile 접속 가능)

- <https://vote.samsungpop.com>

나. 전자투표 행사 ·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3 년 10 월 23 일(월)~2023 년 11 월 1 일(수)

- 첫날은 오전 9 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,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 시간 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.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,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.

6. 주주총회 참석자 지참물 안내

가. 주주 본인: 본인 신분증

나. 대리인: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

※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

- 위임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(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)
 - *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,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.
- 대리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
-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
-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주식회사 원익홀딩스
대표이사 임창빈

[별첨 1] 부의안건 세부사항

제 1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귀환 선임의 건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·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

| 후보자 성명 | 생년월일 |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|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추천인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양귀환 | 1973.08.14 | 사외이사 | 분리선출 | 해당없음 | 이사회 |
| 총 (1) 명 | | | | | |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
| 후보자 성명 | 주된직업 | 세부경력 | |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기간 | 내용 | |
| 양귀환 | 법무법인(유) 광장 변호사 | 2015.11 ~ 현재 | 법무법인(유) 광장 변호사 | 해당없음 |
| | | 2014.05 ~ 2016.02 | 로드스톤파트너스(유) 대표이사 | |
| | | 2013.11 ~ 2014.05 | Volat Altus Holdings, Inc. Managing Director | |
| | | 2010.03 ~ 2013.10 | 동양증권(주)(현, 유안타증권) (최종 : 이사대우) | |
| | | 2003.03 ~ 2010.03 | 법무법인(유) 세종 변호사 | |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| 후보자 성명 | 체납사실 여부 |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|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양귀환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라.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

[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귀환]

자본시장 분야에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기업 및 주주,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의사개진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마.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

[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양귀환]

한국 및 뉴욕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재 법무법인(유)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대상으로 투자, 대출, M&A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과 기업금융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